

안 내 문

임시보관금 계좌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시작 후 5년간 지급 청구 등이 없는 취미우표 통신판매 회원의 예납금에 대하여 2018. 11. 29.까지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『정부보관금 취급규칙』 및 우편업무편람 2편 5장 4절 『우표류의 관리와 판매』 규정에 따라 예납금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, 지급기한 전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내 역 >

○ 귀속대상

임시보관 시작일	임시보관 처리 대상자	임시보관금 총액
2008년 4월 24일	김*자(1002400044) 외 26명	32,110원
2008년 9월 12일	정*자(1002400341) 외 15명	15,080원
2009년 5월 6일	최*규(1002400548) 외 17명	12,990원
2010년 7월 9일	박*병(1002400298) 외 18명	27,100원
2013년 11월 1일	이*수(1002400012) 외 46명	67,900원

※ 상세내역 붙임 파일 참조

- 지급기한: 2018. 11. 29.(목) 까지
- 문의전화: (02)3703-9032

광 화 문 우 체 국 장